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6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2
※ 참고자료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8.
3. 회부연월일 : 2024.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

3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가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상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의7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의3. (생략) <신 설>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 ⑨ (생략)	③ 정부는 제17조제5항제13호의4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상인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화재공제료----- ----- -----.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3의3. (현행과 같음) 13의4.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 1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¹⁾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및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참고 자료 1).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²⁾에 대한 화재공제 사업을 하고 정부가 그 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상인에 대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개정안의 화재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첫째, 운영주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5. 3. 21.)(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 부개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반면,³⁾ 개정안의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가입(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화재공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개정안의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지원)대상인 전통시장 상인조직이 제외되고, 소상공인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공제료 지원주체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화재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화재공제의 가입(지원) 대상 중 ‘전통시장 상인’ 부분은 현행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중복되는 점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에 대한 화재공제 관련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공제 관련 사항을 이 법에 두는 방안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공제 관련 사항까지 모두 하나의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4) 이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관련 사항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1조제1항5)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공제료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담 능력 등을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인수가 거절되는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료 지원은 그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제료 지원 예산 마련에 대하여 재정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은 삭제해야 할 것임.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 (생략)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이하 생략)

[참고자료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 개요

- (사업목적)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17년~)
-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등)
- (지원예산) 9.9억원
- (가입현황) 총 56,038건,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 15,475백만원(’24.9월)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
가입점포수(건)	7,053	12,380	21,790	26,921	35,865	46,778	52,916	56,038
가입률(%)	3.9	6.8	12.0	14.8	19.7	25.7	30.3	32.0
누적 지급금(백만원)	53	176	631	894	1,280	1,980	2,584	4,611
누적 적립금* (백만원)	476	1,340	2,727	4,710	7,305	10,601	13,869	15,475

* 총 공제기금에서 누적 지급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금융기관 예치)

□ 운영 방식 및 가입내용

- (가입단위) 전통시장 內 개별점포
- (가입기간) 1년
- (가입목적물) 건물, 시설, 재고자산, 타인의 재물 및 신체(특약*)
 - * 음식물 배상책임, 화재벌금(’18.7월) 및 휴업손해 담보특약(’21.1월) 등
- (보험료) 주 계약은 연 최소 1만원~최대 304,500원(평균보험료 104,968원)
 -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상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80% 지원
 - * 장기가입(3년) 시 할인 혜택 부여(3년간 300→250% 납부)
- (보상금액) 최소 1백만원~최대 6천만원(건물/동산 각 3천만원)
 - * 평균 보상가입금액 : 2천만원